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경찰 업무 수행 변호사에 대한 취업 제한〉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4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승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3.
3. 회부연월일 : 2026. 3.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등 및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3520호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음.<sup>1)</sup>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정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일반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이러한 취업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면서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직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을 보유하더라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자격 보유자의 직업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능력 또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취업제한을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한편,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

1) 현재 2021. 11. 25. 2019헌마555, 판례집 33-2, 690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세무사법」도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유사한 수임제한을 두고 있는데 전문자격사의 직업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와 같이 종전 소속 기관과 관련된 구체적 업무의 취급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라고 볼 수 있음.<sup>2)</sup>

그런데 최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재직 중 취득한 수사정보나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관예우 및 이로인한 경찰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음.<sup>3)</sup>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 경력 변호사에 대한 법무법인 등의 수요도

## 2) 「변호사법」

### 제31조(수임제한) ① - ② (생략)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선일보, “[단독] 박나래 수사하던 경찰,朴 변호 맡은 로펌 합류” (2026. 2. 19.)

증가하고 있고,<sup>4)</sup>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채 법무법인 내부에서 자문·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종전 소속 기관과의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사 관련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관련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예방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에서 경찰업무수행변호사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전 담당하였던 회계·세무 관련 업무에서 형성된 전문정보나 인적 관계 등을 퇴직 후 활용함으로써 전관예우 또는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업무수행변호사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4) 세계일보, “경찰 중심 수사 대비하는 로펌들… 벌써부터 ‘전관예우’ [형소법 개정 후폭풍]”(2026. 8. 4.)

둘째, 개정안은 취업제한 예외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수사, 심리, 심판과의 관계성은 상당수의 경찰 업무가 포함될 수 있음.

특히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은 그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사·법률검토 등 관련 업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상당수의 경찰업무수행변호사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 후 법무법인등으로의 취업에 최대 5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경찰공무원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찰의 법률 전문인력 확보와 수사·법률 역량 강화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방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다른 전문자격 보유자와의 형평성 및 취업제한 범위의 적정성, 경찰의 법률 전문인력 확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 취업 제한 요건 중 ‘수사’는 경찰 직무 관련 법령에서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리·심판은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sup>5)</sup>

---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변호사 취업 제한을 경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진로 제한으로 인하여 경찰 업무 기피 및 수사역량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